

제330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 폐회중)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월21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인사혁신처
- 나. 기획재정부
- 다. 보건복지부

##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	2
가. 인사혁신처	
나. 기획재정부	
다. 보건복지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국회(임시회 · 폐회 중)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병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호영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확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시에 위원 간 상견례를 하지 못한 정진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정의당 정진후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세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합치해서 모두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위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진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보고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과 보건복지부차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에서 관계 실장님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회의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업무보고

- 가. 인사혁신처
- 나. 기획재정부

## 다. 보건복지부

(14시07분)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혁신처 이근면 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자료 및 의견을 조사·보고·제공 등 실무 지원과 함께 차질 없는 개혁안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안건을 성과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복지국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관섭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입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입니다.

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대상은 재직자 107만여 명, 연금수급자 36만여 명, 부양률은 34%입니다.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을 하고, 기여금·부담금만으로 부족 시 정부가 추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은 재직기간 20년, 60세입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월액 곱하기 재직기간(최대 33년) 곱하기 1.9%를 해 가지고 퇴직연금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연금액 평균은 219만 원입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대해서 6.5~39%를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5년 미만은 6.5%, 20년 이상은 3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수지 부족분은 2001년도에 도입된 보전금 제도를 통하여 일반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93년도 수지 적자 발생 이후 연금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공무원 대량 퇴직으로 인하여 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도에 보전금 제도 도입 후 공무원연금 기금 자체를 증식하여 현재 약 8.5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최초로 기금운용수익 중에 1285억 원을 보전금에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재정 전망입니다.

연금 지출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보수예산의 41.3% 수준으로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전금도 연금 지출 증가에 따라서 2040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보전금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제도 도입 당시 52세에서 82세로 30년 늘었습니다.

부양률도 90년 3%에서 2013년 33.8%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 수급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최대지급률이 60년 제도 도입 당시 30~50%에서 81년에 50~76%로 늘었고, 연금 보험료율은 70년에 7.2%로 인상해서 26년간 유지하다가 96년에 8.4%로 인상을 했고, 2010년에 14%로 인상

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간 제도개선 내역입니다.

95년, 2000년, 2009년, 세 번 제도개혁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개혁 공히 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및 연장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연금액 산정기초 조정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으로, 연금액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금액 산정기초를 퇴직 전 3년에서 다시 전 기간 평균으로 변경하였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액을 전 공무원 평균의 1.8배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률을 최초로 2.1%에서 1.9%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전금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으로 국민·공직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제도개혁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국 제도 현황 및 개혁 사례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84년을 기준으로 구제도와 신제도로 나누어집니다.

CSRS라는 구제도와 FERS라는 신제도가 있습니다. FERS, 즉 신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OASDI(사회보장연금)를—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입니다—1층으로 적용을 받고, 2층으로 공무원연금, 3층으로 TSP(저축계정)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여율은 7%입니다. 7%인데 신제도 FERS는 7%가 국민연금에 6.2%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에 0.8% 그다음에 저축계정에 12%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지급률은 구제도는 재직연수가 많을수록, 길수록 더 이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제도는 연금 지급률이 1%입니다.

정부 부담률은 37.3%, 부양률은 93%입니다.

연금 산정기초는 가장 높은 3년 평균 보수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장기재직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은 구제도는 소비자물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데 신제도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 이하면 그대로 반영하고, 2~3%면 2%, 3% 이상은 -1%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혁사항은 87년도에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성 제고 등을 위해서 신구 공무원을 이원화했고, 다층화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3층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했고, 최근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신규 임용자 기여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도 지금 다층제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2층은 민간근로자는 후생연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공제연금에 직역가산액이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부양률은 67.3%, 연금 산정기초는 전 기간 평균입니다.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0.57%, 지급개시연령은 현재 61세인데 2025년까지 65세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은 소비자물가에다가 거시경제 조정률은 재직자수 감소율 플러스 기대여명 상승률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한 0.9쯤 됩니다. 이것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여율은 지금 현재 8.4%에서 2018년까지 9.15%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률은 27.8%입니다.

8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층제로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전 국민 기초연금 및 공무원공제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무원과 근로자연금, 후생연금을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단층제로 되어 있고, 3층에 개인연금(Riester 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부양률은 52.8%, 연금 산정기초는 최종 보수입니다.

지급률은 1.79%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은 보수 인상률로 하고, 정부 부담은 지금 56.7%입니다.

98년도에 퇴직자 급증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금 인상률의 0.2%씩을 반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민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연금 지급률이나 개인연금 가입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층연금입니다.

부양률은 81.2%, 연금액 산정기초는 퇴직 전 6개월 평균 보수입니다.

지급률은 2020년까지 1.78%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201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액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공무원 기여율은 8.49%에서 2020년까지 10.8%로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담률은 68.6%입니다.

2003년도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수급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여율 인상, 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상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3년 이후 공적연금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직기간 상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률은 89%, 연금액 산정기초는 18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1.78%,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연금액 인상은 물가 및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서 정부 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무원 기여율은 55년 이전 출생자는 12.5%, 55년 이후 출생자는 10.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담률은 61%입니다.

2003년도에 재정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수급구조를 개정했습니다. 연금액 산정기초를 바꾸고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간근로자 및 공무원연금제도 평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45년 재직 시전 기간 평균소득의 80%를 65세부터 적용하는

65-45-80 원칙을 민간근로자 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최관섭 성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님 나오셔서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의 재정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서 연금제도의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보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3개 직역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와 관련해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도입됐습니다. 현재 가입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2013년 기준으로 107만 2000명이 대상입니다.

수급요건은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65세, 기존 임용자는 60세로 연금 수급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36만 3000명이 대상입니다.

기여금과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정부가 기준소득월액의 7%를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액과 관련해서는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재정은 1993년에 최초로 적자가 발생했고 2001년부터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2.5조 원의 적자가 보전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1963년부터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해서 2013년 기준 18만 3000명이 대상입니다.

수급요건은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전역 다음 달부터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8만 2000명이 대상입니다.

기여금과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정부가 기준소득월액의 7%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연금지급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보전금은 1.4조 원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와 사회교대)  
3쪽입니다.

사학연금과 관련해서는 1975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7만 7000명이 대상입니다.

수급요건은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65세, 기존 임용자는 60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2013년 기준 4만 8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은 교원의 경우는 개인이 기준소득월액의 7%, 법인이 4.117%, 국가가 2.883%를 부담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의해서 급여액과 급여의 종류,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은 현재 연금수지는 흑자 상태입니다만 2023년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에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교원에 대해 국가부담금으로 3000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4쪽과 5쪽에 직역연금별 수지 추이나 직역연금 비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한 후에 노후소득 보장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장옥

주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제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는 미래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1쪽, 노후소득 보장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0층과 1층의 공적연금을 구성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2층과 3층의 사적연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함으로써 은퇴 후에 적정 소득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2쪽,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정기적·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작년 5월 20일 제정된 기초연금법이며,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9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4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보다 6.9%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월 2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가구 유형에 따라서 부부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고, 지방비를 합해서 10조 3000억 원입니다.

#### 3쪽,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도에 최초로 시행해서 1999년도에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안전장치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본인 기여분보다 많은 연금을 수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내 재분배 기능이 있고, 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미래세대보다는 적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월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4.5%, 근로자 4.5%로 균분하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기준 2118만 명입니다.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고 연금수급자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357만 명입니다. 이 중에 노령연금 수급자는 294만 명이고, 65세 이상 655만 명 대비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222만 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178만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48만 원이고, 장애연금은 42만 원, 유족연금은 25만 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9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41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 87만 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현황입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 적립금은 446조 5000억 원입니다.

수입은 연금보험료 350조 4000억 원과 운용수익 199조 2000억 원을 합해서 총 549조 6000억 원입니다.

지출은 연금급여로 97조 9000억 원, 관리운영비 등으로 5조 2000억 원 합해서 총 103조 1000억 원입니다.

적립금은 금융부문 444조 7000억 원, 복지 및 기타 1조 8000억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홍종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말씀하십시오.

○홍종학 위원 오늘이 저희가 첫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장관들께서 이렇게 나오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지금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를 보게 되면 대단히 무성의하고 기술적인 얘기, 무슨 실무자들 얘기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특위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고요. 우선 첫 회의에 담당 차관들을 불러서 보고를 받도록 하자, 그것은 업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명백하게 잘 알지 않느냐해서 실무국장하고 아마 담당 과장급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관이라고 해서…… 인사처장은 처장이 제일 높지요? 그렇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위원장대리 조원진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다른 상황이 있으면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장관 출석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배재정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홍종학 위원님께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라는 면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 문제는 지적이 많이 됐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가 그 이후에 지금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게 과연 성의를 가지고 하고 계신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요.

대타협기구의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실한 자료들을 좀 보충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면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공을 해서 특위 또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인사처장님을 비롯해서 나오신 차관님들이 대타협기구의 자료제출 준비를 다 하셨지요? 가능하시면 지금 그 관련 자료들을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전달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원진 예.

○홍종학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우리 특위가 열릴 때는 꼭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3페이지의 재정 전망이 지금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특위 위원님들에게는 이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가정들을 정확하게 밝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재정 전망의 자료를 도출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주시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가공한다거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재정 추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가정들을 다 밝혀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정을 했을 때 언제든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우리 경제학자 전문가 여당 위

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정들을 집어넣으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제안이 될 것인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 금방금방 재정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이 문제는 정부 측하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요.

재정 전망에 대한 배경이나 가정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다음 회의 전까지 각 위원님실 방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홍종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또 한 가지,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교했던 국가의 기준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나라들을 예시했는지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또 그 기준을 잡았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보충자료들을 준비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그리고 가능하면 대타협기구에서의…… 우리 행정실에서는 대타협기구하고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타협기구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각

특위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야지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정부 측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는 수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료하고 회의의 속 기록하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은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가장 기본적인 3대 핵심 내용은 일단 우리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연금재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세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혁했던 2009년도 개혁안을 봤는데요. 2009년도에도 개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1조 9000억 정도의 수지 차가 발생을 했고요, 2010년에 역시 1조 3000 억으로 약간 6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개혁의 효과로 인해서 6000억 정도 줄어들었지만 2011년 · 2012년 해서 작년에는 2조 4854억 원으로 또 다시 수지 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지난 세 번의 개혁이 재정적자가 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개혁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강은희 위원** 앞으로 현행에서는 우리가 어렵게 연금개혁을 시작한 만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이번 연금개혁이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되면서, 또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급권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또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3차 개혁을 해 왔었습니까만 그동안에 보전금이 개혁 전에 17조 원을 예상했었는데 개혁 후에는 9조 원으로 돼서 절감액이 약 8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혁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강은희 위원** 잠깐만요.

좀 선명하게…… 잘 안 들립니다.

○**강기정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난번 개혁이 개혁 전에 17조 원에서 개혁 후 9조 원으로서 절감액이 약 8조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정확하게 개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서 국가……

○**강은희 위원** 처장님, 이번 개혁의 목표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수지 균형을 최소한 맞춰야 되겠다, 이런 목표는 분명하게 하는 게 맞겠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인 연금 상황을 보면 저희 새누리당 개혁안은 앞으로 하후상박 구조로 일단 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굉장히 무성한 소문이, 루머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연금을 적게 받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을 보면 229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보다 적게 받는 분들은 전체의 개혁 내용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안에서 보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평균보다 하위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처럼, 하위직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개혁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연금액의 깎이는 부분이 마치 수십만 원에 이르러서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이번 개혁이 하후상박 또한 포함되어 있는 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이 진행되고요. 앞으로, 시행

되는 2016년도부터의 불입액에 대해서만이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붓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지금까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우선, 저희 새누리당 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했지만 정부안이나 대타협기구에서 명확한 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막연하게 개혁에 대해서 과도한 소문이 들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과도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안의 핵심적인 3대 내용 중에 국가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단 우리가 지금 연금을 개혁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지급체계를 가지고자 하는 그 세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세 번째의 국민연금과, 앞으로 2016년부터 적용될 공무원에 대한 연금체계를 국민연금과 같은 체계로 가지고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것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강은희 위원** 체계가 거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기구에서 잘 타협이,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서로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조원진** 예, 강은희 위원님, 보충……

○**강은희 위원** 말씀을 좀 마무리를……

○**위원장대리 조원진** 말씀을 다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재정 형평성보다는,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처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질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쪽 마이크는 켜져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복지부 차관,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

조금 전에 혁신처장님께서는 ‘특위나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으로의 형평성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이미, 정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재직자와 신규자는 향후에 국민연금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방안을 발표했고, 그것을 새누리당에서 입법했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 14%를 향후에 9%로, 2016년 신규 입직자는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일관된 방침인데, 왜 남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정부안은 현재 단계에서는……

○**강기정 위원** 그런 것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현재 안은 갖고 있지……

○**강기정 위원** 그런데 무슨 국회에다가 왜 넘겨요, 그것을.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정부안을 검토해서 2016년 입직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신규 입직자를 맞추겠다 발표했고 새누리당이 법안으로, 당론으로 낸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특위 회의든 대타협기구든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하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지난 대타협기구에서도 자료가 그토록 영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자료 내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모이는 특위인데, 더 경솔하게 허술하게 내고 있어요.

복지부 차관님,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맞추겠다 해서 보험료율을 인하한 경우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우리 과거든?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

○**강기정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험료율을 낮추겠다…… 지금 조금 전의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나 또 제가 혁신처장님께 한 말씀, 보험료율 14%를 9%로 낮춰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형평성을 이루어가겠다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제가 정확하게 모든 나라의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 파악하고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자리에?

KDI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으니 앞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

○**강기정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는가요?

기재부 차관보님, 지금 연금 충당부채의 개념이 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연금 충당부채.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현재의 연금 지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정부가 우발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의 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출될 연금 총액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까, 채무를 말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개념을 지금 차관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연금 충당부채가 지출될, 일정기간, 향후 2080년까지 지출될 연금 총액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채 총액을 말합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은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기정 위원** 오늘 그러면 아무도, 답변할 능력도 안 가지신 분들이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하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렵니다.

이 기재부 자료가 ‘연금 충당부채는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님’, 그러면 뭐냐? 지출할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됐든 누가,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연금을 맡겨서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하면 ‘2089년 연금 충당부채 484조, 1인당 915만 원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고, 1인당 빚이 915만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아래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돌아 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왜 속입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제 질의가 뭔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가?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

○**강기정 위원** 아이고…… 질의 안 합니다, 안 해!

이게 무슨……

○**위원장대리 조원진** 지금 질문의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시는데, 담당 국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아는 담당 국장이 대신 답을 하든 담당 과장이 답을 하든 내용을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전체가 다 이렇게 궤뚫고 앉아서 하자는 못할 거예요, 여러 그게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참석하신 분 외에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을, 대타협기구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서로 답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하렵니다.

국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할 수 있으면. 연금 충당부채가 뭔지 개념을 아시는 분 좀 나와 보세요, 누구든지.

아니, 대통령도 알고 계세요. ‘1인당 915만 원이 부채다, 이것이 연금 충당부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도 아시는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요? 빚이다……

차관님, 차관보님, 아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

○**강기정 위원** 몰라요, 진짜?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대로 인용할게요.

○**위원장대리 조원진** 담당 국장이 한다니까 한번 들어 보지요.

○**강기정 위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1인당 빚이 915만 원이다, 이 915만 원이 뭐나? 연금 충당부채 484조, 1인당 915만 원이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써 줘서 이걸 지금, 이걸 누가 써 줘서 연두 신년 기자회견에 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입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금 현재 연금 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재직자가 있습니다. 이 재직자가.....

○**위원장대리 조원진**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현재까지 근무를 해 가지고 발생한 연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연금액의 총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과장님, 거기 과장님.....

○**위원장대리 조원진** 잠깐만요.

○**김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강기정 위원** 제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보충질의 좀 해 주시고.

○**강기정 위원** 저 질의 마쳤어요.

○**위원장대리 조원진** 실장님 이시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국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지금 현재 연금 수급자가 36만 명이 있고 재직자가 107만 명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자들은 발생한 연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될 총 연금 가치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국가가 지급해야 될 총 연금 가치라는 얘기지요?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최관섭** 예, 현재 가치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자, 그러면.....

○**김용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예.

○**김용익 위원** 이거요, 지금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혀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긴장감도 없고.

도대체가 뭐 하려 지금 이 회의를, 그것도 지금 첫 번째 회의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이거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제가 우리 양당 간사님께 이거 정회하고 다음, 회의가 필요한 건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서는요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 참고자료, 이 두꺼운 거 작년 4월 8일 거, 작년 4월 23일 걸,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이걸 숙지를 못 하면, 지금 차관보는 둘째치고.....

○**위원장대리 조원진** 진행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다 숙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모르지만 담당 실장이나 담당 국장이 이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행에 있어서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일단 정진후 위원님 질의까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라도 나고 당장 큰, 뭐 국가가 망하고 도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언급하시고 그래서,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개정의 필요성 이게 엄청나게 증대되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 장관님들은 보이지도 않고, 실무자들도 누가 누군지 어떤 답변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걸 저는 다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95년, 2000년, 2009년 이렇게 최근에 공무원연금법들이 개정된 사례들을 보면요, 우선 다 이야

기가 나왔었습니다. 고령화, 연금기금 어떻게 해서 고갈됐다…… 지금은 이야기 나오는 게 연금기금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고령화, 고령화가 작년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사항을 가지고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금 충당부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이건 이미 오래된 고전이에요.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래된 고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마치 2009년이나 200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기재부 차관보께서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정진후 위원 기재부에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금재정’ 해 갖고 ‘적자’ 이렇게 막 용어를 보고자료에 써 놓으셨는데, 적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공무원연금이 적자, 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기본적으로 받는 수급액과 지급액 사이에 있어서의 차이를……

○정진후 위원 그게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전체를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정진후 위원 그러면 전체를 기준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기재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얼마입니까? 1인당, 가구당 국가부채가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

○정진후 위원 거의 6000이 되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부채국가입니까, 예?

이 용어 자체가, ‘적자’라는 용어가 적당한 거예요, 기재부에서 보고서 내실 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아, 그거는 저희……

○정진후 위원 개인이 법에 따라서 기여금을 냈고, 조성돼 왔고 관리는 국가가 맡아서 했는데 적자다, 이 ‘적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용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처에서 나온 것은 보면 ‘보전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보전금’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한 거 같아요. ‘적자’ 이건 아니지 않아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용어를, ‘적자’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려면 그 적자 용어의 정합성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용어를 좀 변경을 해 주세요.

‘적자’로 하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고, 적자 나는 것들은 국민 세금으로 모조리 메우고, 공무원들을 그래서 호위호식하고 이런 것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현재 법상으로도 보전금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보전금으로 하셔야지 무슨 적자, 수지타산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합니까? 수지타산을 적용하려면 연금 설계 자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책을 이야기하셔야지, 단순하게 이걸 수지타산 형태로 해 갖고 적자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 인사혁신처 처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요율이 총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금 기여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후 위원 예, 기여금.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7%입니다.

○정진후 위원 예?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7%입니다.

○정진후 위원 7%, 그것만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닙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퇴직수당도……

○정진후 위원 퇴직수당 2%, 총 합치면……

그다음에 보전금도 부담하고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 보전금은 왜 부담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보전금……

○정진후 위원 애초에 연금 설계를 할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 액수를 전부 다 다 정부가 부담해 온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회의 때요, 다음 회의 때 정부가 보전하지 못했던, 부담하지 못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죽 한번 추계를 뽑아 가지고, 이 내역과 추계들을 총체적으로 뽑아서 금액으로 제시해 줘 보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예, 그걸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게 한 3.4%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가 12.6%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외국의 사례, 금방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국의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그 부담요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금 현재 외국은 공무원연금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래서 성숙도가 있고 부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성숙도가 높아지고 부양률이 높아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숙도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민간기업 있지요, 지금 민간기업, 민간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몇 개를 샘플을 잡으셔 가지고요.

민간기업들은, 일반 기업들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퇴직금도 역시 부담을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좀 몇 개의 기업들을 샘플을 뽑으셔 가지고 근속연수까지 좀 하셔서 부담이, 민간기업이나 대기업의 부담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

○정진후 위원 예, 퇴직금까지 합쳐서…… 국민연금, 퇴직금 다 합쳐서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무작위 샘플로 해 갖고 한 3개 정도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는 우리 정부의 부담률이 좀 더 높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대기업 수준의 기업에 비하면 정부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연금이 세금 먹는 도둑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 2개는……

○정진후 위원 그래서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죽 한번 통계를 내 보세요, 부담률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보게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정진후 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위원님한테 그 자료도 같이 받아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우선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뵙 때는 세 부처 전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용어하고 그런 게 부처마다 사용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 조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연금충당부채 같은 것은 네이버 같은 데 쳐도 사전에도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국가 채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아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꽤 많으신데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민연금하고, 저희가 아마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말한다면 국민연금과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관님,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이고 소득 상한이 있지요? 소득 상한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소득 상한이 지금……

○김현숙 위원 기여금 납부……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408만 원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장님, 지금 공무원은 소득 상한이 얼마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804만 원입니다.

○김현숙 위원 거의 두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 형태로 한다 해도……

그다음에 A값, B값의 소득 재분배를 새누리당안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똑같은 포맷은 떠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은 불리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현숙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시면 단체분들이, 저는 대타협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게 이것은 단지 퇴직에 대한 연금인 것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에 대한 거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당연히 국민연금보다는 관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분명히 6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에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와 여러 가지 지위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국민과 다르게 그 안에서 후불 임금적 성격과 퇴직연금 외에 나머지 성격을 같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보면요, 최초에 시작되었을 때 퇴직연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과 인사 정책적 요소가 고려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의 임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임금이 상당 부분 민간기업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단체도 인정하는 숫자 중에, 100인 이상의 상용근로자의 84.5% 정도의 급여를 지금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물론 급여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여서 연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과는 다르게 훨씬 더 관대한 지불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는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크게 세 번의 개혁을 하는 동안은 그야말로 모수 조정에 그쳤지만 새누리당안은 구조조정,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국민연금이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2028년에?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2028년에 40%까지 갑니다.

○김현숙 위원 혁신처장님, 공무원은 현재는 30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현숙 위원 30년 기준에 1.9%를 하면 소득대체율이 얼마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57%입니다.

○김현숙 위원 1.9 곱하기 30을 하면 되지요? 1.9 곱하기 30 하면 57입니다.

그러면 40년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7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과의 차이가 40년에 40%하고 76% 차이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것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물론 내는 돈이 한쪽은 4.5이고 한쪽은 7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수입 비율을 봤을 때도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야당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족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렸으면 좋겠다, 5%p 올리는 법안을 내셨는데 현재 이것이 참여정부 때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40%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45% 높이는 것이 지금 재정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말씀 좀 주세요, 복지부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그 부분은 보험료율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위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40% 갔던 것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재정이나 저출산·고령화의 타당한 근거들을 충분히 갖고 전문가들의 분석하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예, 그 당시에 많은 대안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물론 전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다 같이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와 같은 여력이 그때에 비해서 재정 상태나 전반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 분석이 안 되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그 부분은 보험료율과 연계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 결국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있지 지금 현재 상태 4.5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여전히 4.5도 균형 보험료율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혁신처장님, 연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타협기구에서 단체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제기하는 부분에 굉장히 간극이 있지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 일부 부분은 사실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공무원 단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법적 조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IMF 때 같은 그런 퇴직금에 대한 얘기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IMF 때의 일시 구조조정 비용 같은 것인데요.

결국은 현재의 보전금 계정이 그 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보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결코 그 추계 차이에 있어서 정부가 추가적인 책임을 더 져야 될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조 정도의 현가로 그 당시의 가치는 2조가 좀 넘고요. 현재로 봤을 때 2013년 현가로 14조 정도가 지금 부당하게 정부가 잘못 사용한 기금이라고 인정하신 거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현숙 위원 그러면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작년까지 메운 액수가 지난번에 17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맞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어떤 보전금으로 채운 부분에서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래서 기회비용이 현재 가치로 하면 21조 2000억 정도로 얘기하고요. 정부가 추가 부담한 것이 25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질의가 끝나면 마이크가 안 꺼집니까?

○김현숙 위원 꺼졌어요.

○위원장대리 조원진 꺼졌어요? 질의가 끝나면 마이크가 끄셨다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때 켜 주세요.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위원 지난 1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할 때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 장관님께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혁신처로 옮겨가서 잘 모른다 그렇게 답을 피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한참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속으로 좀 웃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인사혁신처님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 좀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제도개혁위원회의 첫 회의이니까 우선 해야 될 질문이, 인사혁신처님이 생각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러……

○김용익 위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요점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국민들의 여망은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급여, 노후 안정성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잘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특위에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위원 특위에서 결정한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용익 위원 특위에서 이것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인사혁신처장님의 포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보고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하시라는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이미 새누리당 안이 나와 있고요. 여러 단체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가지의 대안들이 서로 나온다면 그 대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익 위원 아니, 지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로 되어 있는 대표들이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혁신처도 인사혁신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견을 안 내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노조하고 인사혁신처가 당사자가 되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협상을 안 하실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일단 그것이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용익 위원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원 내의 인사혁신처가 고용자로서의 정부의 대표잖아요. 공무원을 고용하는 업무를 하는 게 인사혁신처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 위원 그러면 고용자로서의 정부의 대표인 인사혁신처하고 공무원 노조가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사회적 논의를 더하고, 그다음 단계로 정치적인 논의를 더해서 이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를 묻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정해 주는 대로 다 따라 가겠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일단 토의가 되어지고 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안정화와 민간의 형평성……

○김용익 위원 아니,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토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인사혁신처의 얘기를 하겠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니, 토의 과정에서……

○김용익 위원 아니, 인사혁신처가 무슨 의견이 있어야 공무원 노조하고 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노조의 안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익 위원 아니, 지금 인사혁신처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주체예요, 객체예요? 손님이야, 아니면 주인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사혁신처가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아무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용익 위원 뭐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정말…… 나, 참……

그리고 기재부 차관보님, 기재부를 대표해서 공무원연금특위에 출석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연금충당부채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계산할 때도 그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한참 논의를 했고요. 또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 문제를 논의할 때도 연금충당부채가 성격이 뭐냐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연금개혁 때도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건데, 기재부 차관보가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기재부를 대표해서 아무리, 원래 이 자리에 기재부 차관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건지 장관이 나오시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석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준비는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나는 인사혁신처장님,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잘 못 하겠어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회피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닙니다.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같아.

○김용익 위원 인사혁신처는 내가 보기에는 대타협기구나 지금 이 위원회에서 빠져도 되겠어요. 출석하지 마세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연금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라고 처장님은 생각하세요? 전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용익 위원 끝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원진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신 이종훈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특위 첫 회의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특위가 논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그래도 한 발자국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동 문제를 전공했는데 진짜 어려운 협상을 하다 보면 기본 원칙을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보다 해법 도출이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을 만약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의 공통 부분이 되는—교집합이라고 할까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그런 부분의 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다 총족시키는, 원칙을 총족시키는 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총족시키는 그런 안을 우리가 도출하는, 조금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흐트러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그냥, 이건 제 주

장이라기보다도 이런 식의 원칙을 우리가 논의해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게 5년 만에 다시 개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앞으로 30년은 개혁 안 해도 되게 개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이번 개혁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장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태리가 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연금개혁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이종훈 위원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일곱 번 했고요. 북유럽은 한두 차례로 재정 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럽형으로 갈 거냐 북유럽형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고, 여야 간에도 그 부분은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지 싶고요.

두 번째로 충당부채는 동결한다는, 지금 충당부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던데 제가 이해하는 충당부채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모든 공무원이 지금 다 당장 내 놓으라 할 때 갖고 있는 기금을 주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정부가 순전히 새로 부담해야 되는 게 충당부채거든요. 즉 기준률, 현행 공식으로 할 때 앞으로 정부가 계속 보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동결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최소한 수지균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완전 보장하든지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한다, 퇴직한 기수급자가 받는 것하고 재직근로자가 기준에 재직한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원칙이 예컨대 위헌 소지는 최소화한다 이런 등을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로 소방 등 특수직역을 차등적으로 제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 소방직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짧은 건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고 있습니다. 퇴직도 조금 빠르고요.

(조원진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훈 위원 예, 퇴직도 빠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등적인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외국의 사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의 공백, 즉 퇴직 이후하고 연금개시 연령하고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없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화하든지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세부원칙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과 직결되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원칙 정립과 아울러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용어, 팩트에 대한 공유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적자보전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부에서 말했을 때의 적자라는 것은 연금지출에서 연금수입을 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연금수입에 정부의 부담금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고개를 저음)

○이종훈 위원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이종훈 위원 공무원근로자의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이 들어가요. 그게 연금수입입니다.

그래서 왜 적자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 쓸 수 있느냐 하면, 그 보전금이라는 게 완전히 정부에서 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 특위가 열렸는데 그걸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학 위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위의 진행입니다.

지금 정부가 과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하

는 생각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연금개혁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입니다.

○홍종학 위원 인사혁신처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홍종학 위원 그러면 인사혁신처는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일단……

○홍종학 위원 인사혁신처 안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없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면 정부안이 없이 지금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일단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이 어떤 거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새누리당에서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게 정부안입니까, 새누리당 안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닙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면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그냥 새누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것 연금개혁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해야 됩니다.

○홍종학 위원 왜 해야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여러 번 얘기되어진 바와 같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위원 이것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5000억이 추가되어질 걸로……

○홍종학 위원 1년에?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홍종학 위원 그러면 그 5000억이라고 하는 것 이……

금년도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홍종학 위원** 차관보님, 금년도 재정적자 얼마 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지난해에 2조 5000 억, 올해 2조 9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재정적자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아니, 저희가 보전 금으로……

○**홍종학 위원** 아니요, 전체 재정적자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

○**홍종학 위원**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모르세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올해 작년 대비 한 20조 정도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게 세수하고 해서……

○**홍종학 위원** 작년도 재정적자 얼마예요?

○**위원장 주호영** 정 차관보님, 재정적자가 세수하고 세출 차이를 재정적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맞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얼마입니까, 그게?

○**홍종학 위원** 지금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5000억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고 금년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0 억이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런데 그러면 전체 재정적자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재정적자가 전체 얼마예요? 30조 좀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

○**홍종학 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특위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공직자들이시니까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는데 월급을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지요? 연금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반대하세요,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두 가지가……

○**홍종학 위원** 우리가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연금도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재정 능력과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이건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연금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공무원연금 자체에 문제

점이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면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도 이 연금은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재정적자가 없이 세금도 잘 걷히고 굉장히 나라가 발전하면 이 문제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요. 이 부양률이 높아지면……

○**홍종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하자고요.

이것은 지금 재정의 문제다, 그렇지요? 만약에 재정이 우리가 괜찮았다면 공무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정부도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을, 부자 감세로 인해서—지금 제가 계산한 겁니다—줄어든 것이 218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지금 매년 저렇게 일어나고요.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도에—2013년도까지 지금 결정이 됐고요. 저건 추계입니다—25조 5000억인데, 앞으로 지금 저것보다 늘어난다는 거지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박근혜정부에서 135조 원 이상 재정적자가 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과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재정적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정권별로 보게 되면 이명박정부에서 98조 8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났고 그래서 순국가채무가 99조 원이 늘어났고요. 박근혜정부에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저것도 과소평가되어서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벌의 경우에 매년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비과세·감면을 해 줘요. 이렇게 부자 감세를 통

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파탄시켜 놓고 또 매년 재벌들에게 5조~6조 원을 비과세·감면으로 해 주는데, 재벌에게 5조 원 비과세·감면해 주는 것과 공무원들에게 5000억 원을 더 지급하는 것과, 그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문제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5000억으로 보입니다만 향후 10년 동안에 이게 55조까지 갑니다.

○**홍종학 위원** 제 질문 좀 정확하게 들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정부든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드리기를 원하고 연금을 많이 드리기를 원하지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다른 문제로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그 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100조 원 이상의 파탄 나는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저것을 보전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공무원들의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 안 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느냐고요.

과연 이게 그런 정도로 급한 거냐.....

○**위원장 주호영** 존경하는 홍 위원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인사처장님,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일단은 수급권자의 증가 폭이 너무도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불과 2배로 증가한 것이, 10년 만에 2배가 증가돼서 37만 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급하게 일어나서 20년이 지나면 89만 명이 받습니다. 그 때까지 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주호영** 홍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용어에 대한 혼돈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늘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대타협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다 말이에요. 오늘 이건 생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주무 차관, 주무부처 수장들이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념을 세우지 않고 나와 있으으면 그것 되겠습니까?

기재부 차관보님, 재정적자 30조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관리재정수지로 하면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 제가 질의할게요.

그중에서 20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조 재정적자 중에서 20조가 복지로 들어갑니다. 그걸 복지에 대해서 주장을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했는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의 포퓰리즘은 엄청나게 커지는 데 이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이게 팩트예요. 복지 부분이, 재정적자의 율보다도 복지에 들어가는 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를, 한번 건너간 강을, 다시 강을 건너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힘들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7%, 7%,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7%는 공무원 분들이 내고 7%는 정부가, 50 대 50 내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연금도 되고 퇴직금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맞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걸로 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DJ정부에서 보전금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맞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그 보전금이 얼마나? 올해 보전금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3조입니다, 3조. 우리나라 재정적자의 10%가 공무원의 보전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정적자

의 근 20조는 복지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

그다음에 보면 2020년에 3.8조가 되고요, 2030년에 지금부터 15년 후에는 4.4조가 되는 것입니다, 4.4조. 보전금은 보면 2015년에 2.9조, 2025년에 10조입니다, 10조. 2030년에 14.4조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4.4조, 공무원이 내는 것은 4.4조인데 정부가 보전금으로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14.4조입니다, 30년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4.4조고 정부가 일반기업과 같이 50 대 50 내 주는 돈은 4.4조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14.4조를 보전금으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보전금을 14.4조를 줘야 되느냐, 퇴직금 일시불로 많이 받아 가다 이제는 안 받아 가잖아요, IMF 이후에.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안 받아 갑니다.

○조원진 위원 두 번째는 만들 때 52세인데 82세가 된 거예요, 수명이. 그러면 60세에 그만두고 나면 22년간을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그렇게 82세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 정부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러면 15년 후에 공무원은 4.4조 내고 정부는 부담금으로 정부가 고용주라고 해서는 고용주 개념으로 4.4조 내는데 왜 국민이 14조 4000억을 내야 됩니까?

아니, 공무원은 4조 4000억 내고 고용주인 정부도 4조 4000억 내는데 왜 국민이 14조 4000억을 내야 되는, 이런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바꾸자 이거고요.

두 번째, 인사혁신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무원연금 개정했어요, 2001년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2009년에 공무원연금 개정했습니다. 개정 이후에 5년을 넘겨 봤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니요.

○조원진 위원 개정하고 나면 좀 흑자 구조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셀프 개혁을 했다는, 셀프 개혁.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왜? 정부가 내는 돈이나 공무원이 내는 돈의 거의 4배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로 따지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혁을 했는데 개혁하고 난 다음에 5년을 못 견디고 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것을 머리 싸매고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타협위원회에서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 정부하고 노조하고 공무원 이해당사자하고 임단협을 통해서 안을 내라니까 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안 만들어졌습니다.

○조원진 위원 새누리당은 뭘 그래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무원들하고 적하고 싶어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정부하고 임단협했던 노조가 같이 해서 만든 안을 기다리는데 10년 20년 돼도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나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공무원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당론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만들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조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나 대타협기구가 좀 더 내실 있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러면 오늘 첫 회의인데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그게 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156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욕 다 먹고 인사처장님은 정년 연장한다, 무슨 타임제한다 그렇게 다 하고 욕은 그러면 국회가 다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사자로서의, 공무

원이라는 이해당사자와 또 정부라는 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회의 계속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배재정 위원 마이크를 그렇게…… 마이크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위원장 주호영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마이크를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다음부터는.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배재정 위원 언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관여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제가 오늘로써 두 달 됐습니다, 취임한 지.

○배재정 위원 두 달 되셨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초창기 상황을 직접 책임은 안지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총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요구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국민들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배재정 위원 처장님,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괄 책임자 맞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맞습니다.

○배재정 위원 맞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요구한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뒤로 쭉 빠져 있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 물론 이왕에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졌고 우리 국회 특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고, 지금 답변도 여기 나오신 분들 제대로 하시는 것 하나도 없이, 정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처장님 되시기 이전부터 논의 있었다는 것 알지만 처장님께서 맡으셨으면 처장님의 책임지셔야지요.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전부 다 공무원들이시지요. 그래서 솔직히 공무원연금 개혁 안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많이 수십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시는 분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시겠지요. 이미 많은 것 보장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 안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왜 이런 논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부안도 내지 않고 전부 다 공을 떠넘기고.

저는 조원진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안 내고 지금 사실은 지원을 받고 계신 그런 곤란한 상황이신데, 정부는 거기서 다 손 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위 왜 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정부가 무엇을 설득하러 나오셨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배재정 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아주 누구나 아는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재정적자도 얼마인지 아무도 말씀 못 하셨어요, 여기 계신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심하고 정부 보전금이 많이 들어가고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 얘기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 보여 주시겠어요? 앞으로 특위 열리면 오늘과 다르리라는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개혁이 셀프 개혁에 그쳤다는 그런 평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정부는 아예 안을 내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또한 개혁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는 이게 단순한 미봉책의 개혁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요. 미봉책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심도 있는 안을 준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 보세요, 미봉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미봉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부의 안을 제대로 내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에 하자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봉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준비가 오랫동안 필요했던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래서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것……

○배재정 위원 그것을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정부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그것 야당과 공무원 노조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렵사리. 정부가 만든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정부가 대타협기구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지난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왜 준비도 없이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정작 사회적 대타협기구 만들어지고 우리 특위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그러면 왜 연말까지 다 고치겠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지금 오늘 나와 계신 분들 도대체 이게 생방송 되는 국회 특위에서 있을 수 있는 답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도에 노사가 협의해야만이 정부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논의를 하면……

○배재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해에 노사가 협의해서 그러면 연금 개혁하자고 하셨어요? 노사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 지난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쪽지 건네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노사 합의하셨어요? 왜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이제 와서 국회로 전부 다 공을 떠넘깁니까? 그것을 지금 쪽지 답변이라고 어느 분이 주

신 겁니까? 제대로 합의가 안 됐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교문위 소속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은보 차관보님, 공무원연금법 바뀌면 사학연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 중의 일부분이 사학연금법에 준용토록 돼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 일부분이라는 게 다 핵심이지요. 연금액 산정 방식, 지급개시연령, 퇴직일시금 산정 방식, 연금액 조정 방식. 핵심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준용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배재정 위원 우리 기재부 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하고 사학연금 등은 이번에 같이 논의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얘기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 무슨 논의 구조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한 개혁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논의를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달리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준용이 다 되는데?

차관보님, 준용이 다 되는데 추후에 뭘 논의합니까?

제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연금액 산정 방식, 연금 지급개시연령, 퇴직일시금 산정 방식, 연금액 조정 방식 이것 다 준용됩니다. 추후에 뭐 논의하시겠어요? 뭐 논의하실래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우선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준용되지 않는 이외의 부분에 대한 아마 추가적인 논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핵심 내용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핵심 내용은 다 준용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께서는 부임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또 민간에 죽 계시다 오셨다는 점, 그다음에 정은보 차관보는 오늘 출석하기로 한 차관이 출장 중인 관계로 대참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자신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서 더욱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좀 바짝 당기고 그다음에 하실 말씀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준비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금 개혁할 생각이 별로 없나요?

○**배재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 말씀들을 듣고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연금 개혁이 절박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아주 특이한 특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고용주인 정부가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서 여당이 법안을 대신 내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타협기구도 그렇고 특위도 그렇고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생각, 정부의 계획·전망, 이런 게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안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내지 않고 여당이 대신 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인사처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직생활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마이크를 가깝게 당겨서 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지난번에 몇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개혁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결국은 다시 재정 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에 대

해서 ‘안 되겠다. 그것을 셀프 개혁으로서는 맡길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정부가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혁안을 내놓지 조차 못하고 셀프 개혁 금지, 대신 여당에 의한 대리 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모를 느끼고 있다라고 심정을 제가 대신 표현해도 맞지 않을까요? 처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김성주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김성주 위원** 그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자기 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또 그런 안은 혹시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제 대타협기구에서 정부하고 노조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텐데, 정부안은 새누리당 안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가 자기 안을 내놨을 때 그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노조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검토?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두 안의 차이점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냥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 보고 괜찮은지 판단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판단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주 위원** 더 어렵네요. 판단, 노력.....

‘의지가 좀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공무원노조가 여당 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안을 냈을 때 고용주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표할 것이냐가 대타협기구 성패의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새누리당 안이 유일한, 변경 불가능한 안입니다? 아니면 변경,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그것은, 바로 그 문제는 대타협기구와 특위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루어지면 얘기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뛅니까? 구경꾼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국회 입법 절차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관찰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없어요, 청와대에서? 그냥 여당 뒤에 숨어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의 입장인가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도 안 하셨어요, 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위원장 주호영 처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기고 답변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저희 처는 이 논의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 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의 주체가 노조와 정부가 우선인 것이지, 여야의 동의가 우선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국민연금 개혁안이면 국회 여야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타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와 공무원이 일차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을 보다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대신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김성주 위원 왜 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주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노조하고 타협을 이루어라, 합의해라, 이게 우리 국회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당에게도 안만 내놓고 다시 또 이것을 공전시키지 말고, 좀 더 성의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협적으로 나서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은 들려리 설 생각 없습니다. 여당이 끌치 아픈 문제를 야당을 끌어들여서 벗어나는 데 야당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절대로 들려리 설 생각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부가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합의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계속 도울 생각이고, 그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에서, 특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자기 안도 없고 태도도 불분명하고 의지도 약하다 그러면 이 특위도 무의미한 거고요, 대타협기구도 무의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대타협기구와 특위에 임하는 인사혁신처,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니까 정부의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노조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김용익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오늘 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요, 앞으로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 회의까지 당사자들이 다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안을…… 오늘 입장 표명 어느 정도 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정부는 안을 내놓고 싶어도 공무원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안을 내면 그게 단협에 위배되는 것이라 못 내놓는 건지, 즉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못 내놓는 건지,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셀프 개혁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이유가 뭘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도 안을 내실 건지, 저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다' 이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입장인지, 아니면 고칠 필요는 인정한다면 그것도 또 2개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고칠지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조만간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고칠 필요는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는 것은 끝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협상에만 참여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욕먹을 각오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특위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저 정말 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입장을 보여야지,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익 위원 우선 저도 공무원연금특위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통상 특위의, 국회 위원회의 진행 방식은 위원들이 정부 대표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오늘 얘기의 진행으로 봐서는 이런 회의 방식을 해야 되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 봐야 아무런,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진척이 전혀 없이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데,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께서 심각하게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양당 간에 얘기를 하든지 또는 어떤 소위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든지, 진행 방식이 이것은 좀 곤란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부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도 없고 아무런 개념 설정도 하지 않고 국회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정부 여당께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재촉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 차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야 될 인사혁신처는 지금 아무런 대안을 냈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청와대하고 부처가 무슨 관

계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이 들고요.

그 반면에 여당은 지금 공무원연금 방안을 내놓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게 그러면 여당이 지금 집권당이고 현 정부는 여당이 지도를 한 것인데, 정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여당 간의 3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기에 지금 회의에서 표출되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타협기구와 특위와의 관계는, 대타협기구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특위에서 그걸 놓고 가급적 그것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타협기구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낼 때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용자인 인사혁신처와 그다음에 공무원노조가 주된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쌍방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거들어서 타협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인사혁신처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얘기의 순서가 성립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와 노조가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특위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의 오늘 태도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 구조의 설계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김용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발언을 듣고 우리……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첫 회의를 보고 나니까 일단 정부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아쉽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굉장히 전문적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영역이

굉장히 세부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격에 맞춰서 정부관련자를 답변석에 앉힐 게 아니라 정말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회의라서 우선 처장님의 직접 나오셨는데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연금개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같이 참석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지, 전체 기간이 90일인데 이 중에서 벌써 10일 정도를 이미 쓴 것으로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늦어도 5월 초, 5월 2일까지는 위원회 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 연금개혁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것은 저희 새누리당의 안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야당에도 어떤 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안이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 새누리당 외에는 나머지 안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법안을, 전체 우리 연금개혁을 하려면 우리 새누리당 안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대타협기구는 대타협기구대로 하더라도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서로 의견 조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저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특위가 최소한도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에는 책임성을 담보하실 수 있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연금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이 필

요하다 하는 것들은 사전에 보좌진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타협기구에 제출되었던 보고 자료 그대로 특위에 내놓고, 이게 저는 대단히 지금……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기구를 운영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분명히 살펴서 가지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주제가 정해져서 논의가 됐다든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됐다면 특위에서는 그중에 어떤 논점 하나를 잡아서 최소한도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진전시킨달지 이런 정도가 있어야지 대타협기구에서 보고됐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무성의하게 내놓고…… 이 운영은 일정이 정해져 있는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운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에 있어서도 집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 자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재부 차관보님, 이것은 아시겠지요? 2014년, 작년 8월 27일 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관련한 내용 자료, 활성화 대책 관련한 내용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처장님, 아까 ‘공무원연금 부당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지금까지 25조 8000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사용에 대한 내용은 상쇄되었다, 충분히 그만큼 보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과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재부 차관보님, 저도 사실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는 데 몇 차례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교문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에 사실상 준용되어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준용되어서 개정이 되는 게 이제까지의 통례였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내용도 별반 크게 별도의 논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자꾸만 별도의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 공

무원연금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왜 그런지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차관보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예, 잠깐만요.

앞으로 의사진행발언도, 1차 질의는 시간을 7분으로 정했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양당 간사가 상의하셔서 다시 시간을 정하실 텐데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도 5분쯤 시간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맡아보고 있나요?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위원장 주호영 3분으로 할까요?

의사진행발언은 3분 하고 필요하면 조금 늘리도록,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대타협기구하고 특위하고의 위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고민스러운데 특위는 국회 내에 설치한, 여야 위원으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대타협기구에는 이해당사자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들어와 있고요. 이해당사자는 노조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해당사자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퍼즐을 맞춰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 퍼즐을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인데……

대타협기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이해당사자하고 정부 측이 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임단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주 지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이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정부 측 보고 '임단협 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내라, 그리고 우리도 내겠다.', 그리고 야당도 특위나 대타협기구가 구성이 되면 안을 내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 게 아니고.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야 안이 나오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무원노조가 인정하는 정부 안, 또 공무원노조 안, 이 네 가지 안이 나와야지 협의가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앉아서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누리당 안만 가지고 이것 된다, 안 된다 협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대타협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타협기구는 다음, 이번 회의 말고, 내일 회의 말고…… 이게 특위도 일주일에 한 번, 대타협기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또 보면 일요일 날에도 무슨 회의가 잡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회의가 많아요. 그리고 대타협기구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분과로 넘어갑니다. 3개 분과로 넘어가서 조금 특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문제는 정부 측의 준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측의 준비인데, 아까 이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네 가지의 조건들을 정말 인정하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네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야 간에 좀 더 컨센서스(consensus)를, 협의를 해야 되겠다, 우선 그런 부분의 합의를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고, 오늘 이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두 조직의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주호영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익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김용익 위원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네 가지 방안을 지금 조원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 안, 노조 안, 여당 안, 야당 안,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은 시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연금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측과 노측이 먼저, 다시 말해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의 그룹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야는 정치권을 대표하지만 또한 공무원연금이 위치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여야가 대행해서 방안을 내놓고

협의를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네 가지 방안이 논의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방안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제가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뭔가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안……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것은 사실 정부 안이 나오지를 않고 여당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수순이 이상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얘기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과정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방안에 비하면 지금 인사처의 태도는 매우 당혹스럽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주호영** 김용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이종훈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이종훈 위원**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연금을 지불 못 하는 부분을 노사 당사자들이 알아서 일반 사기업처럼 하면 당사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무조건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을 메워 넣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돈이고 그래서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아까 우리 책임성을 말씀하셨는데 책임성을 갖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반적 노사 관계의 틀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써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기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출석한 기관장들의 준비 정도와 답변 태도

에 관해서 매우 실망이 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답변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위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타협기구의 활동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의 안건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은 맡고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 두 분 간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의 편의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원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최종 확정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일정은 이러한 기준 하에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